

국내 지자체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 내용 및 WHO 8대 영역 기반 물리적 환경 요소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Contents of Ordinances for the Establishment of Age-Friendly Cities in Local Governments and the Analysis of Physical Environment Elements Based on the Eight Area of WHO

○이 지 원* 김 수 영**
Lee, Ji-Won Kim, Su-Young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ordinances on the creation of age-friendly cities enacted by local governments in Korea, focusing on their normative and executive frameworks, and examined the extent to which physical environment elements among the eight domains of the WHO Age-Friendly Cities guideline were reflected. The results showed that while most ordinances ensured consistency with higher-level laws, they lacked specificity in defining target groups and establishing planning guidance systems, and the establishment of dedicated departments was limited to certain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support projects were mainly focused on improving mobility and enhanc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but their concreteness was insufficient.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to supplement the systematic structure of ordinances for the creation of age-friendly cities and indicates directions for improvement.

키워드 : 고령친화도시, 조례 분석,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세계보건기구

Keywords : Age-Friendly City, Ordinance Analysis, 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GNAFCC),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통계청의 2022년 인구 총 조사 기준으로 2024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차지 비율은 2022년 17.4%, 2025년 20.3% 2036년 30.6%, 2054년 40.1%를 초과할 전망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0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에서 출범한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Global Network for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이하 GNAFCC)’를 가입하고 2011년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령 친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를 수립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지자체가 수립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가 지역의 고령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목표, 계획수립 간의 연계성을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건축·도시 공간 계획 요소로 WHO 고령친화도시 모델 가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물리적 환경 분야의 계획 요소가 GNAFCC에 가입한 각 지자체의 해당 조례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물리적 환경 구현을 위한 조례 제정 현황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25년 4월 17일을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시스템에서 ‘고령친화도시’ 검색어로 조례를 검색하였으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총 103개의 조례를 수집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국내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103곳으로 광역 단위의 16개 지자체와 기초자치단위의 87개 지자체가 해당된다. 또한 GNAFCC에 가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례 수립 일자를 기준으로 GNAFCC에 가입한 지자체 총 65곳을 분석 대상을 선정하여 국내 지자체의 고령친화 조성 조례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은 2장에서 고령친화도시 개념과 조례의 수립 배경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 3장에서는 광역·기초 자치 단위로 분류하여 국내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개정 현황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구체적인 조례의 내용을 규범적·집행적 체계로 분석하였다. 분석틀은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조례 연구로 윤평호(2021)와 공정원(2019)의 연구를 참고하여, 고령친화도시 성격과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조문을 유목화 후 분석 요소를 선택하였다. 규범적 체계의 분석 요소는 상위법과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조례의 목적 지향성을 파악하고자 제정 취지와 성격을 연관해서 조례 명, 목적과 기본 이념으로 정했다. 집행적 체계는 정책 집행의 실행력을 위한 요소로 계획 수립 체계와 거버넌스 체계 크게 2가지 범주로 나누었으며, 세부 분석 항목으로 기본계획, 시행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담당부서, 위원회, 국제교류 활성화, 협력체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북에서 제시하고 있는 물리적 환경 범주의 점검 항목을 활용하여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 경북대학교 건축학과 석사과정

** 경북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a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uyoun@knu.ac.kr)

WHO 8대 영역의 물리적 환경 요소를 도출한다.

2. 이론적 고찰

2.1 고령친화도시 개념 및 국내 관련 조례 제정 배경

고령 친화 도시라는 개념은 2002년 유엔(UN)이 제시한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 행동 계획에서 “모든 세대를 위한 사회 구현”이라는 방향성 아래 공식화되었다. 이후 2007년에 세계보건기구(WHO)는 ‘고령 친화 도시 가이드’를 제시하며, 2010년에는 국제 협력 기구인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GNAFCC)’를 출범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기조에 발맞춰 국내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최초로 2011년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수립하며 2013년에 GNAFCC에 가입하였다. 국내 고령친화도시 조례는 「노인복지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개정하는 지자체들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중랑구·광진구, 거제시는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 복지 증진 기본 조례 및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처럼 지자체들은 노인 복지 증진에만 초점을 두고 있던 조례를 노인 복지 증진과 고령친화도시 조성이 이분법적 정책이 아닌 통합적 의미로의 정책으로써 조례의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2.2 선행 연구 고찰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GNAFCC 최초 가입 연도인 2013년 이후의 관련 국내 문헌을 검토하였으며,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로는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가 있다. 이광현(2019)과 조은정(2025)은 국내 고령친화도시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순돌(2014)과 한상훈(2020)은 WHO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관련 조례 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선행 연구들에서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국 실정에 맞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국내 전반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분석한 연구는 없었으며, GNAFCC가입 여부를 반영한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 분석은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의 추이 및 내용을 분석하고 지자체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원사업 내용과 WHO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의 가이드라인을 매칭하여 국내 지자체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의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조례 수립 현황

3.1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조례 수립 현황

4월 17일 기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색어를 고령친화도시로 설정하여 검색했을 때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총 103개로 확인하였다. 광역 단위의 자치 단체가 수립한 조례는 총 16개이며, 자치 단체가 수립한 조례는 총 87개이다. 조례 수립 건수 추이는 2019년(17건) 2021년(23건), 2024년(15건)에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GNAFCC가입 지자체 수 또한 2019년(6곳), 2021년(10곳), 2024년(16곳)으로 조례 제정 추이와 동일하게 증가세임을 볼 수 있다. 이는 관련 조례의 제정과 GNAFCC가입이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24년의 증가세 같은 경우 2023년에 ‘노인복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제4조의3에 고령친화도시 조항이 신설되면서 국가 차원의 행정적·법적 대응강화와 함께 각 지자체 또한 고령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국내 조례 제정 및 정책 마련에 높은 관심을 보였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정순돌, 2025).

3.2 GNAFCC 가입 여부에 따른 조례 제·개정 현황

103개의 조례 제정 지자체 중 59곳의 지자체가 GNAFCC에 가입하였으며, 이 중 조례를 최초 제정 후 GNAFCC에 가입한 지자체는 49곳이 있었다. 이 49개의 지자체 중 GNAFCC 가입 후 관련 조례를 개정한 지자체는 총 21곳이 있었으며 28곳의 지자체는 GNAFCC 가입 후 조례를 한차례도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조례 제정 후 1회 이상 개정한 지자체가 조례의 구체성이 보완되었다고 판단하여 21개의 지자체를 4장의 내용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4. 조례 내용 분석

4.1 규범적 체계

고령친화 관련 조례의 명칭, 목적, 기본 이념을 살펴보면, 지자체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 복지 조례’ 9곳(42.9%), ‘노인 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 2곳(9.5%)으로 고령친화도시 관련 조례 명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과반 이상의 지자체가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노인 복지 증진을 같은 맥락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으로 15곳(71.43%)의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할 당시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상위법으로 하고 있었으며, 조례는 상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률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기반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법」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변화에 대응할 정책 방향과 실행 체계를 규정하여, 국가의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지속 발전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기본이념은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이루고,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 예방과 건강 유지, 그리고 생활 안정 지원을 통해 노인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며, 기본 이념은 노인에 대한 존경, 안정적 생활 보장, 사회활동 참여 기회 제공, 심신 건강 유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위법에서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므로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는 21개 지자체가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을 주요어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목적 지향성 측면에서 규범적 타당성을 갖고 있다. 반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의 대상 범위는 전 연령대의 국민이며, 「노인 복지법」에서의 대상 범위는 노인으로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에서의 기본 이념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상 범위가 전 시민·구민임을 명시한 곳이 21개의 지자체 중 6곳에 불과하며,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목적에서 모두 제시하고 있는 지자체 수가 15곳임을 고려하면 기본 이념은 규범적 타당성을 다수의 지자체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표 1. 규범적 체계 분석 표

구분	핵심 내용	조례 수 (비율%)
조례명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 복지 조례	9(42.9)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	10(47.6)
	노인 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	2(9.5)
목적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5(71.4)
	노인 복지정책	19(90.5)
	고령친화도시 조성	21(100)
	노인복지 증진	21(100)
기본 이념	노인은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19(100)
	노인을 위한 정책은 시민을 위한 정책이며,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시민이 행복한 사회이다.	6(31.6)

4.2 집행적 체계

(1) 계획 수립 체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은 조례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장치로써 기능을 한다. 하지만 조례 내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관한 지침을 모두 제시한 지자체는 4곳에 불과하였다. 이 4곳의 조례를 살펴보면 서울시와 세종시, 부산시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지침으로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 외 공공기관의 장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제주시는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기준에 부합하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지침을 명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자체들은 기본계획의 지침 내용으로 “시장은 노인 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5년 마다 수립·추진 해야하며, 기본 계획에는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분야별 발전정책,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필요 제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지침으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해야한다”라고 공통적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별도의 기본계획 지침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를 예시로 서울시 동대문구의 조례를 보면, 시행 계획 지침 내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별도의 기본계획에 관한 지침을 수록하지 않은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 계획수립 체계 분석 표

구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서울시	O	O	O
서울시 용산구	O	X	O
서울시 마포구	X	O	X
서울시 동대문구	O	X	O
서울시 양천구	O	X	O
서울시 서초구	O	X	O
세종시	O	O	O
광주시	O	O	X
광주시 동구	O	X	O
광주시 서구	O	X	O
대전시	X	O	O
부산시	O	O	O
부산시 수영구	X	X	O
울산시	X	O	X
인천시	X	O	O
제주도	O	O	O
황성군	X	O	O
성남시	O	X	O
고성군	X	X	O
나주시	X	X	O
논산시	O	X	O

(2) 거버넌스 체계

거버넌스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수행 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이며, 고승한(2011)은 도시계획과, 노인장애인복지과 등의 부서들이 상호 논의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업무를 총괄 및 주관하는 전담 부서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조례 내에서도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노인복지과에서 고령친화도시 조

성 업무를 맡고 있는 반면, 광주광역시 ‘고령사회정책과’,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친화팀’은 고령친화정책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광주시 동구의 경우 조례 내에 고령친화정책 담당 부서 설치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나, 업무 조직도를 확인한 결과 여전히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고령친화도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공공의 문제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 인력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 의사결정을 하는 장치로써 기능을 한다(김병섭, 2002). 대다수의 지자체는 ‘노인복지정책위원회’,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위원회 설치 지침을 제시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제교류활성화’,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조문을 보면 국제 교류를 위한 행동 지침을 수록하고 있었다. 이는 지자체들이 지역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GNAFCC 가입활동을 지속가능한 정책 수단으로써 활용하고자 조례의 지침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3. 거버넌스 체계 분석 표

구분	담당 부서	고령친화정책 담당부서	위원회	국제 교류	협력 체계
서울시	어르신 복지과	X	O	O	X
서울시 용산구	어르신 복지과	X	O	X	X
서울시 마포구	어르신 동행과	X	O	O	X
서울시 동대문구	동행과	X	O	O	X
서울시 양천구	어르신 복지과	X	O	O	X
서울시 서초구	어르신 행복과	X	O	O	X
세종시	노인 장애인과	X	O	O	O
광주시	고령사회 정책과	X	O	△	O
광주시 동구	노인장애인 복지과	O	O	O	X
광주시 서구	고령친화팀	X	O	O	X
대전시	노인복지과	X	O	O	O
부산시	노인복지과	X	O	O	O
부산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X	X	X	X
울산시	보훈노인과	X	O	O	X
인천시	노인정책과	X	O	X	X
제주도	노인복지과	X	O	O	X
황성군	가족복지과	X	O	△	O
성남시	노인복지과	X	O	X	X
고성군	복지지원과	X	O	O	X
나주시	사회복지과	X	O	X	X
논산시	100세 행복과	X	O	O	X

4.3 WHO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 기반 물리적 환경 요소 분석

본 절에서는 WHO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을 기반으로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물리적 환경 분야의 야외공간과 건물, 교통, 주거 영역의 세부 계획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수의 지자체 조례는 ‘야외공간과 건물’ 영역과 ‘교통’ 영역을 포괄하여 노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핵심 지원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보도, 인도, 도로, 대중교통, 교통약자 지원 등 물리적 환경 전반에서 이동권 보장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같은 조항은 구체성이 부족해 분석 항목으로의 실효성 판단이 어려우나 향후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지를 남겨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야외공간과 건물’ 영역은 ‘교통’, ‘주거’ 영역과 함께 포괄적으로 세부 계획을 명시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표 4. WHO 고령친화도시 물리적 환경 요소 기반 조례 내용 분석 표

영역 명	조례 내용	반영 가능한 점검 항목	해당 내용을 수록한 지자체 수(비율)
야외공간과 건물·교통	노인의 이동 편의 증진 지원	녹지공간과 보도, 인도, 도로, 교통, 자전거도로, 안전성, 건물, 저렴한 비용, 신뢰성과 배차, 목적지, 노령친화적 차량, 장애인증특별서비스, 노약자우대석, 운전자, 안전함과 편안함, 정류장과 역, 정보, 지역사회교통, 택시, 도로, 운전자자질, 주차	7(35%)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녹지공간과 보도, 인도, 도로, 자전거도로, 안전성, 건물, 노령친화적 차량, 정류장과 역	12(60%)
야외공간과 건물·교통·주거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지원	녹지공간과 보도, 야외의자, 인도, 도로, 교통, 자전거도로, 안전성, 서비스 시설, 건물, 공동화장실, 저렴한비용, 신뢰성과배차, 목적지, 노령친화적 차량, 장애인증특별서비스, 노약자우대석, 운전자, 안전함과편안함, 정류장과역, 정보, 지역사회교통, 택시, 도로, 주차, 필수공공서비스, 설계, 개조, 유지보수, 가정에서의노령화, 주거선택권, 주거시설, 생활환경	8(40%)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 점검 항목이 해당	18(90%)
야외공간과 건물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세대 통합형 노인 친화 공원 조성	녹지공간과 보도, 야외의자, 공동화장실	2(10%)
교통	대중교통시설과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 금액을 할인하여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지원	저렴한 비용, 택시	7(35%)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 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 및 지원	저렴한 비용, 택시	7(35%)
	교통약자 배려 환경 조성	노약자 우대석, 운전자	6(30%)
주거	양로시설 등 노인 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경제적 부담 완화, 주거선택권, 주거시설, 지역사회에 통합, 생활환경	17(85%)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지역사회에 통합, 주거선택권, 주거시설	17(85%)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주거 선택권, 주거시설, 가정에서의 노령화	16(80%)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	지역사회에 통합, 주거선택권	3(15%)
	독거노인 공동생활 가정 지원사업	경제적 부담 완화, 주거 선택권, 주거시설, 지역사회에 통합, 생활환경	1(5%)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경제적 부담 완화, 주거 선택권, 주거시설, 지역사회에 통합, 생활환경	1(5%)
	고령 친화적 설계 적용 임대 주택 및 소규모 주택 공급, 주택 개량 지원 등 고령 친화 주거환경 개선	설계, 개조, 지역사회에 통합, 주거선택권, 주거시설	19(95%)

지자체는 2곳(10%)으로 ‘노인친화공원 조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다음으로 ‘교통’ 영역의 세부 계획으로 ‘대중교통 이용 요금 지원 및 할인’ 7곳(35%), ‘일상생활 관련 교통 요금 지원’ 7곳(35%)으로 지자체들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주요 과제로 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주거’ 영역은 16곳(80%)이상의 지자체가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 재가 노인 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또한 19곳(95%)의 지자체가 고령 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임대 주택 공급, 주택 개량 지원 등 고령 친화 주거 환경 개선을 조례에 세부 계획으로 명시하였다. 이처럼 지자체는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시설 확충 같은 시설 기반 강화를 주요 과제로 보고 있었다.

5. 결론

이번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의 내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을 충실히 반영하여 대상 범위를 노인에 한정하기보다는 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고령친화도시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침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조례 제·개정 시에는 가이드라인, 기본계획, 시행계획으로 이어지는 연계적 구조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수의 지자체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업무를 기존 노인 복지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며, 일부 지자체만 전담 부서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었다. 이는 고령 친화 정책의 종합성과 범 부서 협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담 조직 지정이 보편화되지 못했음을 시사하며, 전담 부서 설치에 관한 조항은 조례에

수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조례의 물리적 환경에 관한 세부 계획은 이동 편의와 주거 개선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성이 부족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조례의 세부 계획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여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윤평호, 윤상오, (2021),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행복조례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5, 335-359
- 공정원, (2019), 지방자치단체의 가족친화조례 내용분석, 여성학 연구, 29, 103-138
- 이광현, (2019), 7개 특·광역시의 고령친화도와 고령친화정책 비교에 관한 연구, 국토 연구, 102, 83-98
- 조은정, 장영호, (2025), 고령친화도시의 효과적 조성을 위한 정책 행정 방향성 제안 연구, 공공디자인연구, 5, 40-47
- 정순돌, 윤희수, (2014), WHO 고령친화도시 실현 가능성 분석: 서울특별시 조례 분석을 중심으로, 65, 109-130
- 한상훈, (2020), 지방소멸 위험의 대안으로서 고령친화도시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38, 135-150
- 김병섭, (2002), 지식정보사회와 차기 정부의 과제 (1) : 정부위원회 조직의 개혁 - 반복되는 답과 잃어버린 질문, 한국행정학회, 79-96
- 고승한, 임병우, (2011), 제주 지역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김미리, (2025), 고령친화도시 2.0을 향한 생활지표 체계: 지속 가능한 포용적 사회를 위한 설계, 서울시복지재단